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역

전주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금) ~ 10월 19일(목) 7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안건수 : 총 29건(** 조례안 4, 폐지조례안 1, 동의안 24)

의안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제안일자	소관위원회
714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과	'17. 10. 10	행 정
71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자치행정과	'17. 10. 10	행 정
716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 계 과	'17. 10. 10	행 정
717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완산도서관	'17. 10. 10	행 정
718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생활복지과	'17. 10. 10	복지환경
719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생활복지과	'17. 10. 10	복지환경
72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생활복지과	'17. 10. 10	복지환경
721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생활복지과	'17. 10. 10	복지환경
72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자원순환과	'17. 10. 10	복지환경
723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건강증진과	'17. 10. 10	복지환경
724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정책과	'17. 10. 10	문화경제
725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문화정책과	'17. 10. 10	문화경제
726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관광산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27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친환경농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28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친환경농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29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30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31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32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33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과	'17. 10. 10	문화경제
734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7. 10. 10	문화경제
73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건 축 과	'17. 10. 10	도시건설
736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건 축 과	'17. 10. 10	도시건설
737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사회적경제지원과	'17. 10. 10	도시건설
738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허승복의원외6인	'17. 10. 10	복지환경
739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순명의원외10인	'17. 10. 10	복지환경
740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7. 10. 11	행 정
741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7. 10. 11	행 정
742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의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7. 10. 11	행 정
	총 건 수 : 29건			
	행 정 : 7건, 복지환경 : 8건			
	문화경제 : 11건, 도시건설 : 3건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14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정과**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교육청소년과**

- 2018년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018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안 번호	715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함

2.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국적	비고(추천자)
게오르그 F. W. 셰플러	64.10.19	남	셰플러 그룹 이사회 의장	독일	신성장산업본부장

3. 근 거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제2조(수여자격),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6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회계관직 명칭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명칭 변경 : 경리관 및 채무관리관(안 제2조 1호)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안 제4조)
- 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지방회계법 제정·시행 등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조례 제명의 형식적 변경
- 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7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에 신축, 우리시에 무상 제공하여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위탁기간이 201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예산 절감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독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 연속성 있는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 독서지도와 양질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어린이 독서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 현 수탁단체 : 사)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21

○ 규 모
- 건물 995.79㎡(지상2층/도서관 773.85㎡, 교양교실 221.94㎡)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18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 목적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재단 사업(안 제1조~제4조)
-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설립 목적 및 설립근거
- 복지사각지대 지원,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나.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안 제5조~제6조)
- 기본재산 조성 내용 및 정관의 기재사항

다.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제10조)
- 임원구성 및 직무,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사항

라. 운영재원 및 자료제공(안 제11조~제14조)
- 재단운영 재원 및 시 재단관련 자료 요청·제공 사항

마.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안 제15조~제16조)
- 재단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제출 사항

바.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안 제17조~제19조)
- 재단의 운영사항 지도감독 및 설립목적 달성 필요시 공무원 파견 사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19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관리운영 협약(무상사용)한『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사용기간 : 1992.09.30.~ 2022.12.31.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기간 및 법인
		사용면적	층 수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10	1,174.77㎡	지하1 지상2	2015.01.01~2017.12.31 (사복)삼동회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20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관리운영 협약(무상사용)한『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사용기간 : 1995.06.29. ~ 2035.06.28.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기간 및 법인
		사용면적	층 수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1,857.24㎡	지상3	2015.01.01~2017.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21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
다.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나.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다.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라.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마.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바.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사.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아.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722

제출년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을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7. 10.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4.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723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정신 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야 하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의거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여부는 2018년도(3단계)에 결정됨. 이에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 (1년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2017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덕진진료실 2층)

다. 인 력 : 16명(센터장1, 정신건강전문요원9, 사회복지사3, 간호사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24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팔복예술공장운영	문화로 재생한 팔복동 공장에 전시장, 창작스튜디오, 교육진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9
2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119'	문화예술 온라인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예술인 중심의 제안의 사업화(수시) 예술인 등록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원	11
3	문화지성네트워크 '똑똑'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담아내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위원 모둠별 활동에서 문화정책 생산	13
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대상으로 주기별 문화예술 맞춤교육개발 및 시행	15
5	전주형 생활문화예술 환경조성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전주시와 함께 생활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16
6	세계 문화현장 탐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문화 현장 체험	17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7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시범배치	생활문화예술 전담 매개자 양성 및 시범 배치	19
8	전주문화도시 조사·기록화 사업	전주문화예술인, 단체, 기반시설 조사 및 DB구축으로 문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발전방안 구상에 활용	20
9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시민대상 전주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22
10	천년전주 문화포럼	문화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포럼 및 문화정책뉴스 온라인서비스 등	24
11	문화벗담 발간 사업	문화담론을 담은 온라인 월간카드뉴스 생산, 전주시 문화경향 및 재단 사업을 담은 연간 지면지 발행	26
12	현장벗담 사업	재단과 문화예술인 간 함께 타지역 견학 및 사례학습을 통한 전주의 문화정책 고민 등	28
13	전주 백인의 자화상	전주 원로예술인 기록 사업	30
14	국가공모사업 지원	문화예술단체 대상 국가공모사업 컨설팅 및 매칭비 지원	32
15	전주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33
16	시각예술지원사업, '도시갤러리, 전주'	시각예술가 지원 사업	35
17	공연예술지원사업, '전주이야기자원 공연화'	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	37
18	국제교류 지원사업	예술가 및 문화기관 간 해외 교류지원	38
19	문화예술의거리 운영사업	3개소 거점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거리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운영	40
20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문화소외계층에게 초상화, 공연예술 등 문화 수혜사업 진행	42
21	마을조사 사업	전주시33개동에 대한 동별 기초문헌 수집정리와 시민의 기억과 이야기 연차별 조사기록 수집	44
22	전주한벽문화관 운영	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체험, 시설 대관 사업 등 진행	47
23	승광재 운영	황실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광재의 시설 관리 지원	50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725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7년 11월 개관 예정인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팔복예술공장을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문화플랫폼으로써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나.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다. 규 모 : 면적 13,224㎡, 건축면적 2,630.87㎡, 연면적 4,246.73㎡

라. 주요시설 : 창작·전시공간, 시민예술놀이터 등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26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 등	7
2	『7일간의 휴-休』 전통문화주간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10
3	전통문화관광 『참 좋은 전주』	전국수학여행단 및 기관·단체, 외국인 초청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 시스템 구축	12
4	전주 할머니『맛』 이야기꾼 발굴	전주음식의 스토리텔링 교육 자료 작성 및 할머니 이야기꾼 양성	14
5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한지를 삽입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및 배포로 전주한지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6
6	전주한지 활용 서화가 시지시필회(試紙 試筆會)	전문가 워크숍 및 한지 활용 시연회, 판매전 개최로 전주전통한지 활용기반여건 모색	18
7	아시아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융화프로젝트』	다문화와 한문화 "융합교실" 구축사업 및 아시아 유네스코 기관연계사업 추진	20
8	한국전통문화전당 기획공모 및 특별전	전통문화(한문화)를 주제로 전주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는 작품 전시를 위한 기획전시실 및 쇼윈도 전시장 운영	22
9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전통문화 심화교육(전수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4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27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바이오뷰티개발 센터구축사업	바이오뷰티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7
2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10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28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
2	전주푸드 사업 운영	직매장 2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관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급식지원을 위한 소모품, 물류비 등)	12
3	전주푸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전주푸드 농산물 다품종 소량생산) 구축을 위한 신규농가 및 생산농가 교육	15
4	6차 산업 활성화	소비자가 전주푸드 생산자와 만나는 먹거리 체험·교육사업 추진, 전주푸드 인식 제고	18
5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전주푸드 1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를 통해 다양한 전주푸드 파생상품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방안 강구	21
6	홍보마케팅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전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주푸드 집중 홍보	24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29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추진 등	7
2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개회식, 글로벌 카본포럼, 탄소기업 공동전시관 운영 등	11
3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탄소복합재 실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직무향상 교육 등	15
4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한국관 부스운영, 전주 탄소밸리 홍보 등	18
5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사업	활성탄소제품 핵심기술개발 등	21
6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국가연구과제 수행(R&D) 등	25
7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국제 공동 R&D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등	31
8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탄소산업 주요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등	35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9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산업현장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고숙련 인재 양성과 기업지원 등	38
10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장비 활용 등	41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섬유복합재 부품 대량생산기술 개발 체계 구축 등	44
11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산업 인프라구축 및 융복합 탄소 소재부품 개발 등	47
12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	탄소밸리 토탈허브시스템의 컨텐츠 관리 등	49
13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 제조용 인프라 구축	고성능 고품위(T800급 이상) 탄소섬유 개발 등	51
14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시장개척 및 시제품 제작 등	55
15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 창업기업 육성지원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58
16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맞춤형 기술혁신 토탈서비스 지원 등	62
17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	세계화 가능성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역량강화 등	65
18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30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시설 및 장비구축, 제작지원, 네트워크 운영, 기업육성 등	8
2	K-ICT 스마트미디어 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센터구축,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양성 등	11
3	지속성장 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	스마트시티 디자인 협의체 운영, 기반 인프라 구축 등	15
4	2018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3D프린팅·드론·ICT기업 등 전시, 홍보 및 기타 부대행사	18
5	드론축구볼 기반 융복합 예술공연사업 (국가직접지원)	드론 실내 군집비행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 공연, 융복합 공연콘텐츠 개발 등	22
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25
7	지역SW기업성장지원	IT/SW분야 선도기업 육성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28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8	지역SW품질역량강화 (국가직접지원)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SW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등	31
9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분야 DIY 창작 환경 구축 및 ICT 창업 및 산업 활성화 촉진	34
1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1인 창조기업 센터운영,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37
11	스마트창작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초기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지원	40
12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뉴콘텐츠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43
13	KOLAS인정기관 추진	국제표준규격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환경 및 보안환경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이전 교육 등	45
14	크라우드 펀딩 전주 액셀러레이터 운영	지역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을 위해 창업 이후 확장·성장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48
15	국제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	농생명 ICT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 용역	50
16	대(對) 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의 중국 등 아시아지역 판로 개척을 위해 마케팅 지원	52
17	유통기한 관리 플랫폼 구축(쓰레기 저감 해결)	쓰레기문제 해결을 관내 유통업체 판매 제품에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구축, 구입 물품 유통기한을 소비자에게 알림서비스	55
18	K-AgTech Festival 개최	농생명 ICT융복합 산업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관련 전시,박람회 개최	57
19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 등	60
20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노후장비 교체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 등	62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31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출연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발굴·육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32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국방분야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군 사업화 참여 주도를 위한 우수과제 발굴 사업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방위사업법 제32조 제6항 제7호

※ 사업계획서(안) : 별첨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33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 강화를 위한 지원 (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출연 필요성

- 지역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34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지도사업 지원(안 제6조)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성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관련 기술보급사업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육묘 기술의 보급사업
○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 종묘 보급사업
○ 기후, FTA 등 농업 외부환경 변화 대응 신소득원 발굴 · 육성지원
○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산물가공실 등의 운영 및 지원
○ 지역농특산물 판매 · 홍보 관련 지원 등지원

나. 교육훈련사업 지원(안 제7조)

○ 농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의 행사 및 교육훈련
○ 식생활, 농산물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 도시농업 활성화, 귀농인, 소비자 등 대상 교육훈련
○ 세계 농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등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35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안전점검 업무를 기술자격을 보유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상간판,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로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내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736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

○ 설치년도 : 201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의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다.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825,868	1,324,671	500	1,324,171	2,150,039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150,039			2,150,039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7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7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등

※ '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26,536백만원)의 10% : 2,653백만원

○ 지원기준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변경)계획 수립, 정비사업 관련 경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의 시행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737

제출연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한시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운영 중이나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

나.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의 위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나. 위탁기간 : 2018. 1월 ~ 2018. 12월(1년)
다. 인력운용 : 3명 정도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허승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8

발의연월일 : 2017. 10. 10.
발 의 자 : 허승복, 소순명, 이경신, 강동화, 김현덕, 이명연, 백영규 의원(7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구)고사동사무소, (구)풍남동사무소, (구)다가동사무소, (구)전동사무소의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경로당, 지역종합복지관 및 부대시설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조례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거나 매각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붙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순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9

발의연월일 : 2017. 10. 10.
발 의 자 : 소순명, 허승복, 백영규, 김진옥, 김현덕, 박현규, 이경신, 박형배, 서선희, 고미희, 양영환 의원(11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내의 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구분표 중 가정용에 어린이집 신설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0

제출연월일 : 2017.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대지 : 982㎡ 건물 : 1,223.82㎡ (지하1,지상3층)	◦사무실 ◦동아리연습실 ◦방과후교실 ◦강당, 컴퓨터실 ◦밴드연습실 ◦공연연습실

※ 현 수탁단체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 김옥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1

제출연월일 : 2017.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법인소유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효자동1가)	대지 : 478㎡ 건물 : 280.57㎡ (지상3층)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교육실 등

※ 현 수탁단체 : 전주YWCA(대표 최명희)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2

제출연월일 : 2017. 10.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259.88㎡ (2층 405.58㎡ 중 일부)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창고 등

※ 현 수탁단체 : 전주탁틴내일(대표 최영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의안 번호	743

제안연월일 : 2017. 10. 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예정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방법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17. 11. 20.(월) ~ 11. 28.(화) [9일간]

○ 감사방법 :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 정수 : 13명 (의장 1, 행정 3, 복지환경 3, 문화경제 3, 도시건설 3)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 참고사항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년 도 별	실 시 방 법	비 고
2009년도	·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11명)	
2010년도	· 상임위원회 별	
2011년도	·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12명)	
2012년도	· 상임위원회 별	
2013년도	·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12명)	
2014년도	· 상임위원회 별	
2015년도	·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14명)	
2016년도	· 상임위원회 별	